

의안번호	2215279
의 퇴 인	박해철의원
회 답 일	2026.3.24.
추계번호	25B6992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가치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2027년 1,600만원, 2031년 1,6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8,000만원(연평균 1,2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사회적가치지표 및 평가 (안 제10조의3제3항 및 제4항)	16	16	16	16	16	80	12

주: 1.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실제 사회적가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2.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 6. “사회적가치지표”란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측정·평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표를 말함	의무규정
2	안 제10조의3(사회적가치지표 및 평가)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회적가치지표 평가를 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가치지표 측정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에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가치지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적가치위원회를 둠(제3항)	의무규정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4항)	의무규정
		사회적가치지표 평가의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제5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3	안 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2조(정의)	—	• 미대상 － 개정안은 “사회적가치지표”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1 3	안 제10조의3(사회적가치지표 및 평가)(제1항) 안 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2항)	—	• 미대상(기존 사업) －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회적가치지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안 제5조제1항), 이와 관련한 사회적가치 지표 개발, 측정·평가에 관한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임(안 제21조제2항) － 고용노동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010년 사회적기업 사회적가치 평가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 시작하여 2016년 사회적가치지표를 개발하였으며, 이후 사회적 가치 측정에 활용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와 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가치지표(SVI) 참여기업 모집을 통해 사회적가치지표를 측정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으로 사회적기업 지원(1037-311) 사업 내에 2026년 기준 10억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개정안의 시행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단위: 백만원) <table><tr><th>내역사업명</th><th>사업 개요</th><th>2026년도</th></tr><tr><td>사회적기업 성장지원(사회적가치평가)</td><td>· 사회적기업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사회적가치지표 평가 체계 확립</td><td>14,171 (1,040)</td></tr></table> 자료: 고용노동부	내역사업명	사업 개요	2026년도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사회적가치평가)	· 사회적기업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사회적가치지표 평가 체계 확립	14,171 (1,040)
내역사업명	사업 개요	2026년도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사회적가치평가)	· 사회적기업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사회적가치지표 평가 체계 확립	14,171 (1,040)							

1)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사회적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가치지표(SVI) 활용 확대”, 2024.6.4.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2-2	안 제10조의3(사회적가치지표 및 평가)(제2항)	—	• 미대상(기존 사업) —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사회적가치지표 측정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위해 (예비)사회적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진흥원 성장지원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으로 사회적기업 지원(1037-311) 사업 내에 2026년 기준 31억 3,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개정안의 시행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단위: 백만원) <table><tr><th>내역사업명</th><th>사업 개요</th><th>2026년도</th></tr><tr><td>사회적기업 성장지원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운영)</td><td>·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운영</td><td>14,171 (3,134)</td></tr></table> 자료: 고용노동부 — 이와 관련하여 전국에 설치된 성장지원센터는 사회적가치지표 측정기준 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평가에 참여한 기업들은 측정 결과를 활용하여 자치단체, 민간기업 등이 진행하는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¹⁾ [표]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주요 업무 <table><tr><th>구분</th><th>공공행정 지원</th><th>센터 운영 및 상담</th></tr><tr><td>통합센터 (6개소)</td><td> — 사회적기업 인증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부처형) 지정 지원 — 사업보고서, 경영공시 지원 —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교육 — 협동조합 교육, 경영공시 및 관리감독 지원, 취약계층 고용증명서 발급 </td><td rowspan="2">입주기업 모집, 선발 교육, 멘토링 등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제도안내 및 상담 센터 시설 대관 및 관리 등</td></tr><tr><td>일반센터 (13개소)</td><td>— 공공행정 관련 업무 안내, 상담</td></tr></table> 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사회적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가치지표(SVI) 활용 확대”, 2024.6.4.	내역사업명	사업 개요	2026년도	사회적기업 성장지원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운영)	·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운영	14,171 (3,134)	구분	공공행정 지원	센터 운영 및 상담	통합센터 (6개소)	— 사회적기업 인증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부처형) 지정 지원 — 사업보고서, 경영공시 지원 —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교육 — 협동조합 교육, 경영공시 및 관리감독 지원, 취약계층 고용증명서 발급	입주기업 모집, 선발 교육, 멘토링 등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제도안내 및 상담 센터 시설 대관 및 관리 등	일반센터 (13개소)	— 공공행정 관련 업무 안내, 상담
			내역사업명	사업 개요	2026년도												
사회적기업 성장지원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운영)	·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운영	14,171 (3,134)															
구분	공공행정 지원	센터 운영 및 상담															
통합센터 (6개소)	— 사회적기업 인증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부처형) 지정 지원 — 사업보고서, 경영공시 지원 —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교육 — 협동조합 교육, 경영공시 및 관리감독 지원, 취약계층 고용증명서 발급	입주기업 모집, 선발 교육, 멘토링 등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제도안내 및 상담 센터 시설 대관 및 관리 등															
일반센터 (13개소)	— 공공행정 관련 업무 안내, 상담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 또한, 고용노동부는 정부 정책 집행기관(지방관서, 자치단체, 진흥원)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시행하고, 인재개발원 설립과 기관 부설 교육 시설 마련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교육 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2026년 기준 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개정안의 시행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단위: 백만원) <table><tr><th>내역사업명</th><th>사업 개요</th><th>2026년도</th></tr><tr><td>사회적경제 교육</td><td>· 정부 정책 집행기관(지방관서, 자치단체, 진흥원) 담당자 대상 교육 운영을 통해 사회적기업 담당자 전문성 강화 및 담당자 간 소통·협력 강화, ② 인재개발원 설립운영 방안과 기관 부설 교육 시설 마련에 대한 타당성 검토</td><td>400</td></tr></table> 자료: 고용노동부	내역사업명	사업 개요	2026년도	사회적경제 교육	· 정부 정책 집행기관(지방관서, 자치단체, 진흥원) 담당자 대상 교육 운영을 통해 사회적기업 담당자 전문성 강화 및 담당자 간 소통·협력 강화, ② 인재개발원 설립운영 방안과 기관 부설 교육 시설 마련에 대한 타당성 검토	400
내역사업명	사업 개요	2026년도							
사회적경제 교육	· 정부 정책 집행기관(지방관서, 자치단체, 진흥원) 담당자 대상 교육 운영을 통해 사회적기업 담당자 전문성 강화 및 담당자 간 소통·협력 강화, ② 인재개발원 설립운영 방안과 기관 부설 교육 시설 마련에 대한 타당성 검토	400							
2-3 2-4	안 제10조의3(사회적가치지표 및 평가) (제3항 및 제4항)	○	• 추계 －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2-5	안 제5조(구매촉진)(제5항)	—	• 미대상 － 개정안은 사회적가치지표 평가의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이므로, 개정안의 시행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사회적가치지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적가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금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임
 - 또한, 개정안은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시점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다만, 본 추계서는 고용에 관한 국가의 주요시책 및 고용정책기본계획 등의 심의하는 고용정책심의회 분과회의 중 하나인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사례를 토대로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에 대해 검토
 - (민간위원 수) 20명
 - (단가) 안전 검토비 등을 포함한 회의참석 사례금은 1회 회의 개최 시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²⁾
 - 이때, 회의참석 사례금은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횟수) 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씩 연간 4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

[표 6] 사회적가치위원회 구성·운영 비용추계: 2027~2031년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민간위원 수(A, 명)	20	20	20	20	20	—
회의개최 횟수(B, 회)	4	4	4	4	4	—
회의참석사례금(C, 만원/명·회)	20	20	20	20	20	—
추가재정소요(D=A×B×C, 백만원)	16	16	16	16	16	80

주: 1,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실제 사회적가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2.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전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하며,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내로 편성(기획재정부,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5.5.p.222.)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재정수반요인에 대한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 본 추계 결과는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실제 사회적가치위원회
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

[참고자료] 전국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현황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지역	소재지	지역	소재지
서울1 (통합)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 286 아인빌딩 8, 9층	대구 (통합)	대구 중구 태평로 160 대구스테이션센터 10, 11층
서울2	서울 영등포구 선유동2로 57 이레빌딩 16층	경북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7 경상북도경제진흥원 6, 8층
인천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99, 애니오션빌딩 11, 12층	부산 (통합)	부산 수영구 수영로 688 국민연금공단 사옥 5, 6층
경기 (통합)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182 KT모란빌딩 5, 6층	울산	울산 남구 변영로 145 극동방송빌딩 7, 8층
경기 북부	경기도 양주시 덕계로 140 진산메디프라자빌딩 4, 5층	경남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367, 에스엠이빌딩 7층
강원	강원 원주시 상지대길 83 상지대학교 대학원관 1, 2층		경남 진주시 동진로 99, 지역청년혁신센터 2층
광주 (통합)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198 KH타워 4,5,6층	세종 (통합)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KT&G 세종타워A 6층
전남	전남 목포시 영산로 118 KT 목포빌딩 9층	대전	대전 서구 대덕대로 239 대교눈높이사옥 3, 4층
전북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174, DNB빌딩 5, 6층	충남	충남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773 용주프라자 3, 4, 5층
제주	제주 제주시 노형동 1296-8 제주관광대학교 교육관 3, 4, 6층	충북	충북 청주시 상당구 복문로3가 15-1, 우민타워 3층